

2017년 하반기·2018년 9급 시험대비 행정법 모의고사

김진영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 甲이 서울시장에게 일정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시장이 甲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공개요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정보인 경우에도 공개할 수 있다.
- ②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 ③ 서울시장은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장은 공개청구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여야 하며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광계획인가로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공유수면점용불허가사유를 근거로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행위는 특정 개인의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③ 폐기물처리사업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일반적·추상적 효력을 가지는 이용계획의 특성상 그 변경을 신청할 개인의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상실한다.

3.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 등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되지 않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의 이념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부과·징수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3자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명의로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인가와 기본적 법률행위의 효력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합설립인가행위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이러한 인가의 유무에 따라 기본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관련한 공법상의 관계에서이지 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② 기본행위인 하천공사에 관한 권리.의무 양수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그 보충행위인 허가처분은 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 ③ 기본적 법률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인가가 있어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되지 않는다.
- ④ 적법.유효하게 성립한 기본적 법률행위가 사후에 실효되면, 인가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5. 행정처분의 성립.발효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였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있었음을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다.
- ②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 ③ 납입고지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위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6. 부관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질은 재량행위이며, 이에 대하여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하지 않은 조건(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예외적인 개발행위의 허가에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③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의 법적 성질은 재량행위이므로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④ 부관인 부담의 이행행위인 법률행위는 공법상의 법률행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부담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면, 그 이행행위인 기부채납이나 금전납부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이득이 된다.

7. 특허와 인가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는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인가가 있는 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갖지 않는다.
- ④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공유수면매립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양도약정의 효력은 무효

이다.

8.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세부적인 내용을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위임이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령에 위임할 내용을 행정규칙에 위임한 경우에도 상위 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있고 상위 법령을 보충하여 결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정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 ② 이러한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며 포괄위임은 금지된다.
- ③ 행정규칙에 일정한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는 제한적이어야 한다.
- ④ 대통령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허용되면서 헌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은 열거적인 규정을 해석되게 되었다.

9.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에 대한 개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고용주 등을 포함)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0. 공법상의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령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상실된다.
- ② 납입고지는 공법상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통고처분은 행정형벌의 공소시효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③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 ④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11. 행정행위의 작용 중 소급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담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재송을 제기하여 재송에 의하여 취소되면 그 효과는 소급한다.
- ②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행위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며 소급적용은 금지됨이 원칙이다.
- ③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 그 효과는 장래효를 갖지만 수익적 행정행위를 실효시키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갖는다.
- ④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재송을 제기할 경우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집행정지결정은 소급하지 않는다.

12.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임용신청에 대한 거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처분의 사전 통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의견청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 ③ 불이익처분의 경우 청문·공청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견제출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
- ④ 상대방이 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위원회가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본안에 대한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의 1인이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다른 공동소송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에도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한다.
- ④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주장한 경우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14.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무이행이 있기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벌과 구별된다.
- ② 판례는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납부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한다.
- ③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한국자산공사의 재공매(입찰)결정 및 공매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5.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이나 그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위와 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해 주는 재량행위이다.
- ②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에 의한 용도변경승인 행위 및 용도변경의 불가피성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이다.
- ③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의 성질은 특허이다.

④ 건축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물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신고 내용대로 용도변경된 건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의 제약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6.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시가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법령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경우 그 고시는 근거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② 재량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는 재량준칙에 대한 자기구속이 인정된다.
- ③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훈령에만 근거하여 발령된 침익적 행정처분은 무효인 훈령에 기초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 ④ 대통령령이나 부령의 형식으로 발령된 제재적 처분기준에 대해서 판례는 그 법규성을 부인하고 있다.

17. 강학상 허가과 예외적 승인의 비교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허가는 공익침해의 우려가 있어 잠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인데 반하여, 예외적 승인은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해하여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② 허가는 예외적 승인의 경우보다 엄격한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 ③ 예외적 승인은 허가보다 개인의 법적 지위를 확대시킨다.
- ④ 허가는 예방적 금지의 해제, 예외적 승인은 억제적 금지의 해제에 관한 것이다.

18.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과잉금지의 내용 중 적합성의 원칙은 가장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 행정청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는 명문의 규정 유무를 불문하고 위법하게 된다.
-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인정하게 되면 행정규칙 위반에 대하여 위법성 인정이 가능하다.
- ㉣ 자기구속의 법리는 불법한 관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인정되면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관계는 비법관계로 보게 된다.

- ① 2개 ② 3개
- ③ 4개 ④ 5개

19.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이 비치된 결과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부실의 근거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상 과실과 그 같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②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

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③ 현재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국가배상심의회는 배상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도 국가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판례는 상급자가 전입신병인 하급자에게 암기사항에 관하여 교육 중 훈계하다가 도가 지나쳐 폭행한 경우에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집행성을 인정하고 있다.

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④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1. ④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정보는 비공개 정보로 되어 있지만 이는 기속적 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비공개 정보를 행정청은 공개정보로 하여도 된다.

①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공개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② 동법 제17조

③ 동법 제16조

2. ③

③ 판례는 계획변경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지문은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이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대판 2003. 9.23, 2001두10936).

① 인.허가의제제도에 있어서 의제되는 처분의 요건이 불비된 경우 주된 인.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02.10.11, 2001두151).

②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건설부장관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그 입안·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계획재량처분이다(대판 1997.6.24, 96누1313).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 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달리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대판 2012.3.22, 2011두6400 전합).

3. ②

②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인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이외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의 이념까지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9.6.18, 2008두10997 전합).

① 대판 2009.1.30, 2006다17850

③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하게 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변상금 부과·징수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대판 2014.9.4, 2012두5688).

④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액을 납부할 때에는 체납자의 명의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를 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3자가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세무서장 등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시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대판 2015.11.12, 2013다215263).

4. ②

② 인가는 기본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본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가도 무효가 된다.

① 대판 2005.4.29, 2004다7002

③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고 인가가 유효한 경우 인가로 인하여 기본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④ 인가는 기본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본행위가 실효되면 인가도 실효된다.

5. ①

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위 처분이 있었음을 위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07.6.14, 2004두619).

②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③ 대판 1988.3.22, 87누986

④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대판 2002.12.10, 2001두3228).

6. ④

④ 판례는 행정행위의 부담이 위법한 경우 이러한 부담의 이행으로 인하여 사법상의 법률행위(기부채납)가 어떠한 효력을 발생하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부담의 이행으로 인한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별개의 행위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부담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어서 사법상의 기부채납이나 금전납부는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① 대판 2007.7.12, 2007두6663

②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예외적인 개발행위의 허가는 재량행위이다. 따라서 재량행위에는 법령의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조건이나 기한·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대판 2002.9.24, 2000두5661

7. ③

③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8호, 제26호 (가)목, (라)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별표 1]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대판 2016. 7. 14, 2015두48846).

④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공유수면매립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에 있어서의 면허관청의 인가는 효력요건으로서 위 각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위 면허의 공동명여자 사이의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양도약정 면허관청인가 받지 않은 이상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대판 1991.6.25, 90누5184).

① 대판 1996. 5.16, 95누4810 전합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인가가 있는 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대판 1998.6.26, 96누18960).

8. ④

④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허용되면서 헌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은 예시적인 규정이 되었다.

① 행정규칙에 일정한 법규사항이 위임되면서 법령보충규칙이 출현되게 되었다.

② 법령보충규칙에 일정한 사항이 위임된다고 하더라도 위임입법의 한계는 준수되어야 하며 포괄위임입법은 금지된다.

③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

9. ④

④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 ①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 ②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10. ①

① 예산회계법 제98조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상실되지 않는다(대판 2000. 9.8, 98두19933).

② 공법에서는 납입고지자체만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며, 통고처분을 하게 되면 행정형벌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③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대판 2001.8.21, 2000다12419).

④ 대판 2006.2.10., 2003두5686

11. ③

③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와 실효시키는 행위 모두 소급효가 아닌 장래효를 갖는다.

① 부담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다.

② 과태료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3조). 따라서 소급효는 금지되며 일정한 경우에만 소급효가 인정된다.

④ 예외적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효를 갖는다.

12. ②

② 사전통지의 예외 3가지는 의견청취의 공통된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경우 판례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대판 2003.11.28, 2003두674).

③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의견제출은 일반절차로서 청문, 공청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견제출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

④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의 경우에는 신청에 의한 청문이 인정되게 되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13. ③

③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3호).

① 대판 1991.6.25, 90누8091

② 대판 1986.10.14, 83누5848

④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

14. ④

④ 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한국자산공사가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7.7.27, 2006두8464).

① 집행벌인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복할 수 없는 행정벌과 구별된다.

② 이행강제금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히 무효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의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된다(대판 2006.12.8, 2006마470).

③ 과징금은 그 취지와 기능, 부과 주체와 절차 등을 종합할 때 부당내부거래 역지라는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헌재결 2003.7.24, 2001헌가25).

15. ②

②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용도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용도변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은 특정인에게만 용도 외의 사용을 허용해주는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대판 2011.1.27, 2010두23033).

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이나 그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위와 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이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재와 문언상 분명한 한편,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예외적인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에 틀림이 없으므로, 이는 그 법률적 성질이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1.02.09, 98두17593).

③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

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0.1.28, 2009두4845).

④ 대판 2006.1.26, 2005두12565

16. ④

④ 제재적 처분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그 형식이 대통령령인 경우에는 법규성을 인정하고, 부령인 경우에는 법규성을 부정하여 행정규칙으로 평가하고 있다. 판례는 이렇게 대통령령 형식인 경우와 부령인 형식의 경우를 구별해서 법규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① 행정규칙인 고시가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그 법령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근거법령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어 법규명령에 준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위 국세청훈령인 위 주류유통거래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필경,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법령의 근거 없는 명령으로서 무효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같은 규정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없는 규정에 근거한 무효인 처분으로서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보아 마땅하다(대판 1980.12.9, 79누325).

17. ②

② 예외적 승인이 재량행위이므로 허가보다 국가의 감독을 더 받는다.

①, ④ 허가는 잠정적인 금지를 해제하는 행위이지만, 예외적 승인은 억제적 금지의 해제로서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

③ 예외적 승인은 허가보다 더 엄격한 것을 해제하는 것이므로 그 허가보다 법적 지위가 확대된다.

18. ①

② 틀린 내용은 ㉠, ㉡이다.

㉠ 과잉금지의 원칙 중 적합성의 목적과 수단사이에 적합하여야 하지만 가장 적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목적달성에 기여할 정도이면 충분하다.

㉡ 비례의 원칙은 행정법의 법원 중 불문법원이므로 이는 실정법규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위반하여도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평등의 원칙이나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하여 법규성이 인정되면 위법성 인정이 가능해진다.

㉣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적법한 행정관행을 요구하는 것이며, 위법한 행정관행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이 문제된다.

㉤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하여 행정규칙이 법규명령으로 전환되게 되면 특별권력관계 내부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가 인정되게 되면서 비법관계가 아닌 법관계로 인정되게 된다.

㉥ 신뢰보호에 위반한 경우 보상보호보다는 존속보호가 당사자에게 유리하다.

19. ①

①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이 비치된 결과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부실의 근거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상 과실과 그 같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판 1991.7.9, 91다5570).

② 대판 1981.8.25, 80다1598

③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을 받아 현재는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동의하고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④ 대판 1995.4.21, 93다14240

20. ②

②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과태료 감경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다.

① 동법 제15조

③ 동법 제55조

④ 동법 제24조의2